



세무일반편

세무조사 트렌드 (비정기조사) 들여다보기

MIT  Medi Information Teacher



한국경영전략연구소
Korea Management Building Institute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ermission of Korean Management Building Institute.

세무조사 트렌드(비정기조사) 들여다보기

2020년도부터 이어 온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세수는 역대 최다였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세청은 엄청난 빈축을 샀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올해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겠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조사를 전혀 착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수하는 정기세무조사는 줄어들지만, 정기조사가 줄어든 만큼 탈세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기조사는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의 주요 타겟이 되는 ‘비정기 세무조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 선정

‘사업을 하면서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 받는다’ 는 얘거나 ‘소득을 너무 낮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는 얘기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정기조사 선정 사유를 ‘성실도 분석’ 이나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기조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비정기조사 유형

1. 차명계좌

차명계좌 조사는 사업과 관련된 매출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명계좌 사용혐의를 국세청에서 포착하는 경우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가 나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한 출처를 보면 크게 ‘외부고객’과 ‘내부직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외부고객

가장 보편적인 포착방법은 바로 고객의 탈세제보입니다.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로 계좌이체를 하는데 계좌의 예금주가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이름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고객들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여 쌓이는 경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탈세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내부직원

회사에서 회계담당 직원은 내부의 자금사정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회사나 대표와의 갈등으로 좋지 않게 퇴사하는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한 자료를 가지고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응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기 전에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역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료상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자료상 혐의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상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기에 관계없이 착수하고 있습니다. 자료상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타인의 명의로 발행한 경우(위장발행): 공급가액의 2%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공발행): 공급가액의 3%

하지만 이보다 큰 제재는 바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입니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원칙적으로 무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과소신고시 10%) 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자료상 행위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40%의 가산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2) 제척기간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척기간'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국세청이 잘못을 따질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3) 통고처분 or 고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 외에도 내역에 따라 세액의 2배~3배 이하의 추가적인 벌금(통고처분) 을 받게 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되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세무조사 전망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내역은 당시의 사회적 이슈나 경기상황, 정책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서민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내년에도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조사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근 몇 년간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영끌' 이 많았던 만큼 신고되지 않은 증여가 많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금출처조사가 취득자금의 원천 소명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이나 부모님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세수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는 착수한 후에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굳이 세무조사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업상의 결정, 가족 간 증여의사 결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